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34 발의연월일: 2024. 11. 15.

발 의 자:이만희·김기웅·박대출

김미애 · 신성범 · 권영진

김장겸 · 임이자 · 서일준

최보윤 · 송석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수목원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을 명시하고, 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현행 최장 8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2023년에 재검 토기간이 도래한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재검 토 실익이 없는 수목원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제 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을 명시함(안 제2조·제3조).

- 나. 국·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최장 8년에서 4년으로 축소함(안 제6조의2).
- 다. 수목원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 한을 삭제함(안 제23조의2).

법률 제 호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관리 및 전시"를 "관리·전시·교육"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관리 및 전시"를 "관리·전시·교육"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본문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년"을 "1년"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	1			
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				
식·보존· <u>관리 및 전시</u> 하고	<u>관리·전시·교육</u>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 · 산				
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				
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				
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1의2. ~ 7. (생 략)	1의2. ~ 7. (현행과 같음)			
제3조(사업) ① 수목원은 다음	제3조(사업) ①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				
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				
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	1			
·보존·복원· <u>관리 및 전시</u>	<u>관리·전시·교육</u>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			
정·해제 등) ①·② (생 략)	정・해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宁	목원	조성예!	정지의] 지	정기
간은	<u>5년</u>	이내료	ː 한[7. t	누만,
농림측	축산식	품부령	으로	정	하는
사유이	에 해도	당하는	경우	에는	<u>3년</u>
의 범	위에게	너 한	차례	만 그	. 지
정기경	간을 약	년장할	수 있	(다.	

④ ~ ⑥ (생 략)

제2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 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 정요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 른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201 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②	
<u>3년</u>	
	- <u>1년</u>
④ ~ ⑥ (현행과 같음)	
<u><삭 제></u>	